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관한
당사 한국 특허의 유지 심결에 대하여

2020년 12월 23일
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

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본사: 도쿄토 치요다쿠, 사장: 코보리 히데키, 이하 「당사」)는 금년 1월 29일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를 제조·판매하는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본사: 도쿄토 시나가와쿠) 및 그 연결 자회사인 W-SCOPE KOREA CO., LTD.(이하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를 공동 피고로 하여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에 관한 당사의 한국 특허(특허 제 10-0977345 호, 이하 「당사 특허」)에 기초하여,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이 판매하는 폴리올레핀계 미다공막 제품(「SB12D」, 「SB16D」, 「단층 W-scope」 등을 품명으로 하는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 제품을 포함)에 대한 한국에서의 제조 및 판매 금지 등과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사가 해당 소송을 제기한 후, 금년 3월 11일에 피고 중 한 회사인 W-SCOPE KOREA CO., LTD.는 당사 특허의 무효를 구하며 한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한국 특허심판원은 양측의 공방을 충분히 심리한 뒤, 금년 12월 2일에 W-SCOPE KOREA CO., LTD.에 의한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리고 당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적 재산을 중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관련 프레스릴리스·알림】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
(2020년 2월 4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19/pdf/el200204_1.pdf

「선전시 쉬란전자 유한공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
(2018 년 8 월 20 일)

<https://www.asahi-kasei.co.jp/asahi/jp/news/2018/el180820.html>

「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2020 년 5 월 11 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0x69-att/el200511_1.pdf

이상